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277
----------	-------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2203644	임미애의원	2024. 9. 4.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9367	오세희의원	2025. 3. 26.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5.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9538	김남근의원	2025. 4. 2.	
2210116	김동아의원	2025. 4. 25.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8.26.)
2215232	이만희의원	2025. 12. 15.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3.31.)
2215821	박상웅의원	2025. 12. 31.	
2215882	송재봉의원	2026. 1. 7.	
2216455	민병덕의원	2026. 1. 30.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8.20.)
2216487	김현정의원	2026. 2. 2.	
2216840	김용만의원	2026. 2. 12.	
2217723	이양수의원	2026. 3. 25.	
2217991	이주희의원	2026. 3. 31.	
2218006	오세희의원	2026. 3. 31.	
2218897	강민국의원	2026. 5. 8.	
2219520	김승원의원	2026. 6. 26.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8.31.)
2220027	임이자의원	2026. 7. 20.	
2220449	최기상의원	2026. 8. 5.	
2220803	이강일의원	2026. 8. 26.	

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는 위 18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 9. 3.)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

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유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 중 “60일 이내”를 “35일 이내(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2.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 ----- ----- ----- <u>20일</u> ----- ----- ----- <u>. 다만, 천재지변,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u>35일</u> 이내(납품업자별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매입마감일부터 <u>20일</u> 이내)----- ----- <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③ · ④ (생략)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천재지변</u> <u>2.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의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3.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u> <u>의 승인을 받은 경우</u> ③ · ④ (현행과 같음)
-------------------	--